

2012년도 ESCO사업 자금지원지침

에너지관리공단은 올해 초 2012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 접수일정을 공지하였다. 공지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 신청은 총 3차에 걸쳐 접수를 받으며, 2012년 ESCO투자사업은 2,100억원(정책자금 중 39.7%)으로 전년도(3,400억원)대비 1,000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으며 2,100억원 중 1,470억(70%)는 중소기업에, 630억(30%)는 대기업에 지원할 예정으로, 중소기업은 투자사업의 전액을 지원해 주지만 대기업은 60%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자체자금 혹은 민간융자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2012년도 ESCO자금지원 지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자료제공 /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효율자금지원실

2012 ESCO 투자사업 지원 안내

I. 2011년 ESCO투자사업 실적

2011년 지원실적

- 2011년 일반 현황
 - 예산액 : 6,018억원 (ESCO : 3,900억원)
 - '11.7.1 이후 ESCO예산 500억원 절약으로 조정, 9.1 이후 통합
 - 지원비율 : 80%이내(중소기업 및 ESCO계약은 100%이내)
- 2011년 지원실적
 - 합리화자금 지원실적(인출금액기준) : 5,902억원 (집행율 : 98.1%)
 - ESCO자금 지원실적(인출금액기준) : 2,854억원 (집행율 : 73.2%)
 - ESCO사업 지원실적
 - 추천액 : 222건 3,314억원
 - 인출액 : 202건 2,854억원
 - 취소, 포기, 변경 : 20건 460억원

• 최근 5개년 ESCO등록 업체 현황

구분	'07	'08	'09	'10	'11
등록업체	25	20	33	63	54
취소업체	27	33	48	9	0
활동업체	156	143	128	182	236

• 최근 5개년 ESCO지원 실적(기업별)

구분	'07	'08	'09	'10	'11
대기업(억원)	414	463	547	381	1,122
%	30.5	41.6	41.5	29.2	39.3
중소기업(억원)	943	652	772	926	1,732
%	69.5	58.4	58.5	70.8	60.7
합계(억원)	1,357	1,115	1,319	1,307	2,854

* '11년 실적은 예산 구분 기준임

• 최근 5개년 ESCO지원 실적(계약별,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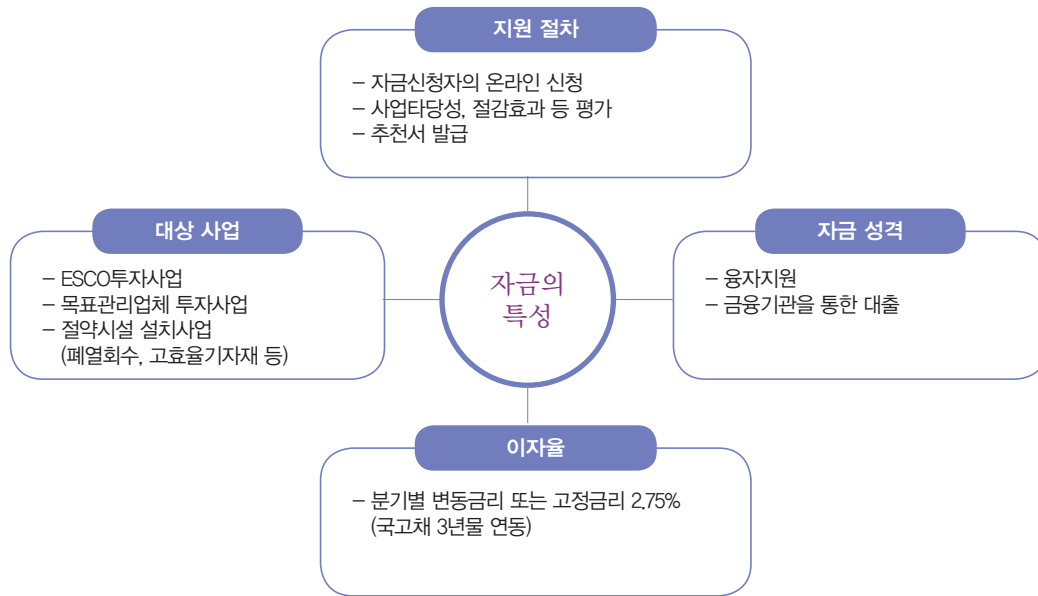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성과배분	건수	102	91	91	103	93
	지원액	132,891	97,114	114,307	104,452	89,326
신성과배분	건수	-	-	-	-	28
	지원액	-	-	-	-	29,933
성과보증	건수	1	7	8	17	81
	지원액	152	12,432	17,071	24,474	166,131
운전자금	건수	3	2	1	2	-
	지원액	2,659	2,000	500	1,810	-
합계	건수	106	100	100	122	202
	지원액	135,702	111,546	131,878	130,736	285,390

• 최근 5개년 ESCO지원 실적(계약별,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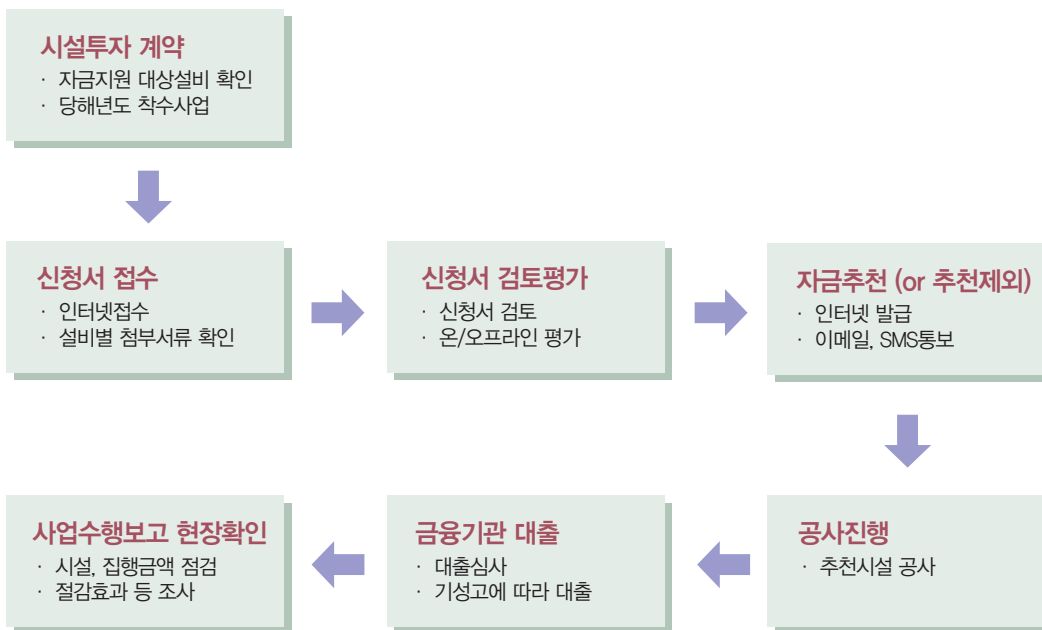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산업체	건수	30	57	55	60	112
	지원액	55,165	80,433	85,691	78,616	234,112
건물	건수	35	23	19	27	69
	지원액	52,322	23,237	27,875	17,780	24,011
공공부문	건수	41	20	26	35	21
	지원액	28,215	7,876	18,312	34,340	27,267
합계	건수	106	100	100	122	202
	지원액	135,702	111,546	131,878	130,736	285,390

II. 2012년 ESCO 투자사업 자금지원

자금지원개요



자금지원절차



용자조건

• 2012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정책자금)

사업명	지원규모 (억원)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 기간	이자율
1. ESCO투자사업	2,100	300억원 이내 (동일투자사업자당 150억원 이내)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 별회계 운 영요령」에 따름
2. 목표관리업체 투자사업	1,698	15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3. 절약시설 설치사업	1,500	10억원 이내		
3-가. 고효율제품 등 생산 시설설치사업		5억원 이내		
3-나.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합 계	5,298	-		

* 대출기간 및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요령을 따름

• ESCO투자사업 재원별 예산 운용 계획

구분	정책자금(ESCO자금)	ESCO민간융자자금
지원예산	2,100억원	700억원
지원규모	신규사업 지원 가능액의 70%를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 (계속 사업은 지원예산에서 제외)	정책자금과 혼합지원 가능
대출금리	연 2.75%(고정) 연 1.75~3%(변동)	미정(4~5%)

- * 지원대상은 ESCO투자사업의 에너지사용자를 기준으로 함
- * ESCO투자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은 100%, 에너지사용자가 대기업인 경우 60%지원
- * 대기업 지원비율 60%이며 잔여 소요자금(40%)은 민간융자자금으로 혼합지원함
- * ESCO펀드 대출금리는 [민간조달금리(미정)+금융기관취급수수료(1.5%)-이차보전(약2%)]을
기준하여 산정 예정

2012년도 자금지원지침 주요 개정사항

- 중소기업 우선 지원
 - 계속사업 지원예정액을 제외하고, 신규사업 지원 가능액의 70%를 중소기업 지원예산으로 배정(계속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은 제외)
 - 단, '11년도에 시행했던 중소ESCO가 성과보증계약시 중소기업 예산에서 지원조건은 폐지
- 지원대상 확대, 조정
 - 단열개보수사업 신설 지원, IT활용 ESCO사업 본격 지원
 - 신·증설 폐지(단, 신재생에너지설비만 허용)
 - '11년도에 시행했던 에너지절감효과가 5%이상시 자금신청 필수조건 폐지(단, 온실가스 배출 감축설비 설치사업 및 기타 에너지효율향상사업만 5%이상 필수)
- 지원한도 축소
 - 동일사업당 한도 : 250 → 150억원, 동일사업자당 한도 : 500 → 300억원
 - * 민간자금 지원한도 : 사업당 100억원, 사업자당 200억원

2012년도 자금지원지침 주요 내용

- 지원대상자
 - ESCO : 성과배분 또는 신성과배분 방식 ESCO투자사업
 - 에너지사용자 : 성과보증방식 ESCO투자사업
- 지원대상사업
 - ESCO 및 에너지진단기관이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에 의한 에너지진단에 따라 아래 시설 설치를 ESCO계약으로 추진하는 설비

ESCO 자금 지원 세부내역	
1. 절약시설 교체사업	[별표]의 제 2, 3, 3-나 의 설비로 교체하는 사업
2. 단열개보수사업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건축물중 10년 경과한 건물의 단열사업
3. IT 활용 에너지관리사업	기존 건물, 공장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IT기술을 적용한 사업
4. 신재생에너지설비	자가사용 목적(바이오, 폐기물 제외), 신재생에너지 지원 용자기준 적용
5. 온실가스배출감축설비	에너지진단결과 공정별,설비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5% 이상인 설비
6. 기타 에너지효율 향상설비	1~5 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로 진단결과 에너지절감 효과가 5% 이상인 설비

- 제외 사업
 - 전기를 주동력원으로 사용 하는 냉, 난방기 (단, 10년 이상 노후 전기설비 교체시 인정)
 -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하는 시험성적서가 없는 전기절전기 및 신개발 제품
 -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설비, 정부정책에 적합하지 않은 설비 등
- 지원 조건(에너지사용자 기준)
 - 중소기업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대기업 : 소요자금의 60% 이내(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을 6:4 비율로 혼합지원)
- ESCO 민간용자자금(700억원)
 - ESCO민간용자자금 : 연 2%의 이차보전을 통해 연 4~5% 수준에서 지원
 - 해외 ESCO사업 추진시 지원가능
- 평가제도 시행(2011년 도입)
 - 에너지절감효과가 높은 사업의 우선자원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에너지절감효과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구 분	평가자
추천대상금액 40억원 이상	자금추천위원회(관련분야 전문가 15인 이내, 오프라인)
추천대상금액 40억원 미만	자금추천 평가위원(관련분야 전문가 3~5인, 온라인)

* 평가기준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신청 및 심사기준 참고

- 추천기준
 - 총점 70점 이상 → 자금추천, 총점 70점 미만 → 추천제외

- 평가제외 사업
 - 추천대상금액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
 - 전년도에 추천 받은 계속사업, 고효율에너지인증기자재
 - 에너지진단결과(의무진단) 절감효과가 5%이상인 사업
 - 전력수요관리시설 등 에너지절감효과 산출이 어려운 사업
- 자원 조건(기간)
 - 계약일 기준 2012년도 1월 1일 이후 착수된 사업(2011년 4분기 계약분 포함)
- 자금대출
 - 간접대출방식: 은행 대출시 담보 등이 필요, 신청 전 거래은행과 사전협의 필요
 - 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초인출시한(추천 이후 3개월)내 추천자금의 20% 인출
 - 추천된 자금은 당해 연도에 인출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된 자금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자(시공업체)에게 직접 지급
 - 최초 인출 시한내에 자금을 인출 못하거나 당해연도 미인출된 자금은 자동 추천취소
- 사후관리
 - 설치 완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수행보고서 제출
 - 최종자금 인출 후 설치내역의 실태조사를 위해 현장방문
 - 위반시 연체이자 13%를 포함한 대출금 회수 및 향후 3년간 자금지원 제외
 - 허위서류 제출시 자금추천 취소 및 향후 3년간 자금지원 제외

III. 2012년 자금 추천신청 및 심사기준

2012년 자금추천 및 심사기준

- 신청기간 : 사업별 예산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구분
 - ESCO투자사업 : 회차별 접수
 - 절약시설설치사업 : 회차별 접수
- 신청방법 : 인터넷을 이용한 자금추천 신청
 - 에관공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 서류보완, 반려, 추천변경, 추천포기 전 과정이 On-line에서 진행됨
- 추천신청서류가 자금추천 심사시 참고사항이므로 신중하게 작성
 - 사업계획 타당성, 에너지진단의 충실도 등 평가에 반영

ESCO사업 평가제도 도입

- 자금지원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해당여부에 따라 평가후 자금지원

• 효과적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문가 평가 도입

구분	평가자
추천대상금액 40억원 이상	자금추천위원회(관련분야 전문가 15인 이내, 오프라인)
추천대상금액 40억원 미만	자금추천 평가위원(관련분야 전문가 3~5인, 온라인)

- * 계속사업중 사업비의 30% 이상 증감 등 사업내용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심의 가능
- * 처리기간 : 20일(평가제외사업), 30일(평가대상사업)
- * 평가제외사업 : 계속사업, 5천만원미만 사업, 의무진단 연계사업, 고효율인증기자재 설치 등
평가기준은 사업효과, 절감량 산출 근거, 계약방식 등을 적용

2012년도 자금추천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사업계획 (10)	① 사업계획 타당성(10)	10	9	8	7	6	
	② 산출근거 타당성(10)	10	9	8	7	6	
사업효과 (60)	③ 에너지절감효과(30) 아래 <에너지 절감효과 산출공식>에 의해 산출된 값(10e/년·억원)과 '②산출근거 타당성' 항목의 취득평점에 따른 가중치(가~다)를 적용하여 평점 부여	절감효과 가중치	100 이상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40 미만
		가) 1.0	30.0	28.0	26.0	24.0	22.0
		나) 0.9	27.0	25.2	23.4	21.6	19.8
		다) 0.8	24.0	22.4	20.8	19.2	17.6
		라) 0.7	21.0	19.6	18.2	16.8	15.4
	〈에너지절감효과 산출공식(자동산출)〉 절감량(10e/년)/사업비(억원)=(10e/년·억원)	마) 0.6	18.0	16.8	15.6	14.4	13.2
		④ 에너지절감률(20) 아래 <에너지 절감률 산출공식>에 의해 산출된 값(10e/년·억원)과 '②산출근거 타당성' 항목의 취득평점에 따른 가중치(가~다)를 적용하여 평점 부여	절감률 가중치	20% 이상	15% 이상	10% 이상	5% 이상
	가) 1.0	20	18.5	17	15.5	14	
		나) 0.9	18	16.7	15.3	14.0	12.6
		다) 0.8	16	14.8	13.6	12.4	11.2
라) 0.7		14	13.0	11.9	10.9	9.8	
〈에너지절감률 산출공식(자동산출)〉 {사업전사용량(10e)-사업후사용량(10e)} / 사업전사용량(10e)×100%	마) 0.6	12	11.1	10.2	9.3	8.4	
	사업내용 (30)	⑤ 계약형태(10)	성과보증, 신성과배분 10점		성과배분 5점		
⑥ MRV계획 타당성(10)		10	9	8	7	6	
⑦ 에너지진단의 충실도(10)		10	9	8	7	6	
가감점 (+10) (-8)	⑧ 중소기업 가점(중복가점 가능, 최대 5점)	1. 중소기업사용자(+3) 2. 중소기업(+2)					
	⑨ ESCO역량 가점(중복가점 가능, 최대 5점)	1. 우수ESCO(+1) 2. 전문ESCO(+2) 3. 대·중소 컨소시엄(+2) 4. 기술개발 및 교육실적(+1) 5. 민간자금활용(+1)					
	⑩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감점(중복감점 가능)	1. 주의·경고(-5), 2. 취소·포기(-2), 3. 50%미인출(-1)					

IV. 세액공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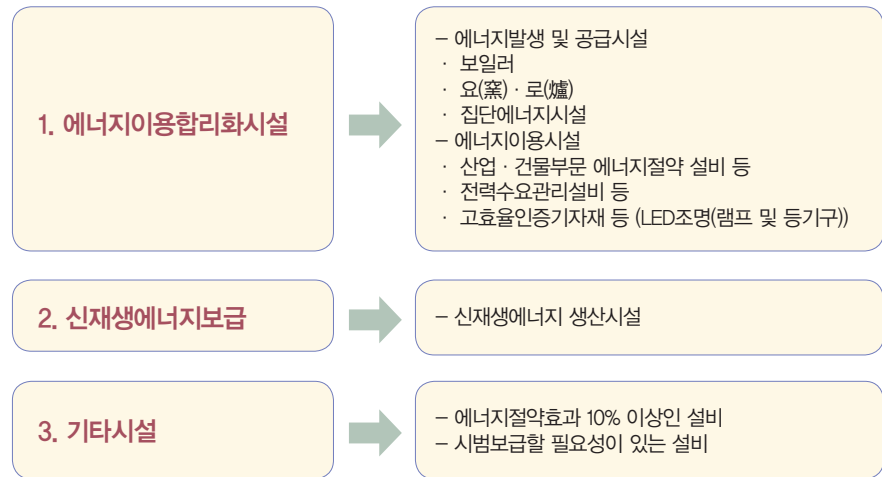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경우 세무서에 직접 신고
-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특법 제25조의 2

- * 대가를 분할상환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
- *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 조특법 제 7조
- *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세액공제 대상설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 3 에너지절약시설



※자세한 시설 내역은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 3 참조